

## 특약변경보고서

1. 약관명 : 『 **건설애(愛)통장** 』 특약
2. 변경의 필요성 : 건설근로자 공제회 요청에 의함
3. 주요 변경 내용 : 상품명 변경
4. 신규 조문 대비표 : 하단 참조
5. 시행(예정)일자 : **2019년 1월 18일**
6. 사후보고 근거 : 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의 2. 이용자의 권익 확대를 위한 약관 변경
7. 상품의 특징 : [첨부] 참조
8. 약관본문 (전체) : [첨부] 참조
9. 기타 참고사항 : [첨부] 참조

<신규 조문 대비표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『건설애(愛)통장』</u> 특약</p> <p>제 1 조 ~ 제 4 조(생략)</p> <p>제 5 조 이자지급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. 제 1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<b>원가일</b>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 계산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하는 금리로 계산합니다.</p> <p>③. (생략)</p> <p>제 6 조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『건설하나로 통장』</u> 특약</p> <p>제 1 조~ 제 4 조(좌등)</p> <p>제 5 조 이자지급</p> <p>① (좌등)</p> <p>②. 제 1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<b>다음 원가일</b>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 계산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하는 금리로 계산합니다.</p> <p>③ (좌등)</p> <p>제 6 조 (생략)</p>	<p>상품명 변경</p> <p>용어 정리</p>